[붙임3] * 공인중개사가 작성

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서

(단독.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용)

○ **임차목적물 주소지** :

(단위:원)

층수	호수	방개수	계약유형	보증금	월세	최우선변제보증금	비고
계							

※ **작성방법 :** 희망주택의 모든 세대별 임차내역(보증금, 월세) 및 계약유형(전세, 반전세, 월세)을 작성하고, 비고란에 거주 세대가 LH 입주자인 곳은 "LH 입주자", 공실인 곳은 "공실", 집주인이 거주하는 곳은 "주인 거주", 본인이 입주할 곳은 "입주 희망" 표기

<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0번 기재 내용>

㉠ 선순위임차보증금액	원			
㉡ 지원대상주택전체호수	호	방 개수		개
㉢ 공실전체호수 (집주인거주포함)	호	방 개수		개

□ 본인은 상기 주택의 임대인(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)으로서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함

년 월 일

확인자	임대인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
		주 소			
		연락처			
	개업공인 중개사	상 호			
		등록번호		대표자	(인)
		주 소			
		연락처			

※ 동 서류는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따른 「확정일자 부여현황」,「전입세대 확인서」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함

※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(본인 서명 확인서)상 인감(서명)과 동일해야 함

한국토지주택공사 귀중